



제1704호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6 8 6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1 6 9 5 호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재 무 과 7
- 공 고 제 1 6 9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원 제2호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운 교 통 행 정 과 22
- 공 고 제 1 6 9 7 호 광고판 및 철 구조물 직권 철거 통지 도 시 경 관 과 25

고 시

- 고 시 제 9 5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 지 정 보 과 27
- 고 시 제 9 6 호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고시 공 동 주 택 과 29
- 고 시 제 9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30
- 고 시 제 9 8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 지 정 보 과 32

구보 정정 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587호

구보 제 1699호(2022.08.25.)에 게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587호(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사업시행자 조서(지장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내용 추가	구보 제1699호(2022.8.25.) 45쪽 ※ 내용 추가에 따른 쪽 번호도 수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674호

구보 제 1703호(2022.09.06.)에 게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674호(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사업시행자 조서(지장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내용 추가	구보 제1703호(2022.9.6.) 217쪽 ※ 내용 추가에 따른 쪽 번호도 수정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68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남동구청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42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2. 9. 7. ~ 2022. 9. 22.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8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89두0919	박*용	2022.08.0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어**아파트)
2	61무8266	조*준	2022.08.0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서**아파트)
3	61무7328	한*샘	2022.08.0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7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동 ***호(구월동, 동*빌라)
4	85부9554	(주)씨****스	2022.08.04 수취인불명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 (고잔동, 남동공단**블럭**롯데)
5	49가7921	김*진	2022.08.0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트)
6	31노1076	함*술	2022.08.0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우측미등)	215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금*아파트)
7	76머4086	이*균	2022.08.05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호(구월동)
8	53두7593	나*주	2022.08.09 폐문부재	미인증 등화 설치	215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만수동, 담**아파트)
9	인천남동파94 05	백*우	2022.08.09 폐문부재	미인증 안개등 설치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_**, ***호(만수동, 태**빌라)
10	82수2117	주식회사 인****발	2022.08.09 수취인불명	미인증LED설치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 ***호(고잔동, 삼*빌딩)
11	인천연수다32 34	김*민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번호등)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만수동, **맨션***-*동)

12	69도1989	조*상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호(간석동, 리**차)
13	64라2015	김*일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좌측제동등, 우측번호등)	2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아파트)
14	50루0621	이*숙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인***단지)
15	68구3684	권*석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다동 ***호(간석동, 홍*빌라)
16	87저7576	안*희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논현동, 인**오)
17	398모2294	권*욱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민*빌라)
18	28저2053	조*민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번길 **-, ***호(서창동, 가**지)
19	303주9844	양*우	2022.08.12 폐문부재	등화착색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호(논현동, 논**차**티)
20	01보7189	장*주	2022.08.2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아파트)
21	16거4373	김*윤	2022.08.2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트)
22	인천남동타51 49	이*주	2022.08.26 폐문부재	붕인탈락	215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
24	33도3647	고*셉	2022.08.26 폐문부재	번호판 꺾임	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윤연천로 **, ****동 ****호(서창동, 인**린)
25	인천남동파33 71	정*현	2022.08.22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불법가이드)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동**슬)

26	인천남동타46 22	이*주	2022.08.26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다동 ***호(구월동, 성*빌라)
27	97오8932	이*성	2022.08.26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6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나동 ***호(구월동, 신*빌라)
28	87무7992	구*갑	2022.08.25 수취인불명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롯데*빌라)
29	인천84배1872	이*익	2022.08.26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우측제동등)	216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논현동, 논** *마을)
30	05두4012	봉*주	2022.08.26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6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동 ***호(서창동, 태*아파트)
31	52오5417	김*임	2022.08.26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제동등)	215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호 (구월동)
32	96로7902	이*호	2022.09.0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만수동, 신*빌라)
33	인천30바7066	조*춘	2022.09.0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동 ***호(간석동, 삼*빌라)
34	인천81바1762	나*환	2022.09.02 폐문부재	등화장치불량 (좌측제동등)	216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도림동, 주**아파트)
35	서울강서차38 88	신*수	2022.09.05 폐문부재	봉인탈락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구월동, 해**)
36	92주3173	김*원	2022.09.05 폐문부재	번호판 꺾임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라*빌라)
37	인천남동파71 74	허*	2022.09.05 폐문부재	봉인탈락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만수동, 롯데*션)
38	인천부평아51 78	이*승	2022.09.05 폐문부재	봉인탈락	215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광*아파트)

제1704호

남동구 구보

2022. 9. 8. 목요일

39	57녀8525	홍*애	2022.09.05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설치	215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구월동, 구***단지)
40	53나8586	P**O Y****I	2022.09.05 폐문부재	점멸동작장치 설치	21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만수동, 햇**아파트)
41	인천남동카82 51	김*순	2022.09.05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동 ***호(만수동, 신*다세대)
42	인천남동타94 63	가*혁	2022.09.05 폐문부재	미인증LED설치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간석동, 태**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695호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2. 4. 1.) 일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행 규칙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훈령 개정에 따른 각 조문의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집행 품의 생략가능 항목 명시(안 제5조)
- 재정합의에 대한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재정합의 대상 금액 조정(안 제6조 별표 3)
- 지출의 절차 조문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재무과 / ☎ 453-8521, FAX 453-22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5. 개정규칙안 : 별첨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2. 4. 1.) 개정
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행
규칙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훈령 개정에 따른 각 조문의 근거 규정 변경
- 집행 품의 생략가능 항목 명시(안 제5조)
- 재정합의에 대한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재정합의 대상 금액 조정(안 제6조 별표 3)
- 지출의 절차 조문 신설(안 제7조)

☐ 본 문 : “별첨”☐ 별지서식: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12조, 제77조, 제105조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한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경비 중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본청의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수리·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포함)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부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피보증인으로,”를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정보증한도액)”을 “(재정보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도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재무과장	재정경제국장	
1. 공사·부동산 매입 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 용역·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	
4. 민간위탁경비	500만원 이상	-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500만원 이상	-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500만원 이상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비	전액	-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남동구 구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생략)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또한 겸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산집행 품의를 「남동구 사무전결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

처리 규칙」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한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 경비 중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책기획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③ -----
----- 훈령 제12조제2
항-----

-----.

1. ~ 9. (현행과 같음)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본청의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수리·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포함)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본청의 부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제7조, 제8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생략)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관해야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 직무대리 규칙-----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

-- 직무대리 규칙-----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
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
증관리책임자는 제11조에서 정
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
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 제16조 (생략)

----- 피보증인으로, 「보험
업법」 제2조에 따른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보증금액) ① -----
----- 금액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4조부
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시·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③ 의회사무처(국·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지출의 절차)①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前日)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별지 서식 제64호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에는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다른 1부는 별지 서식 제65호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10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 - 16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원 제2호 공영(노외)주차장 유료(무인)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7-2번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설되는 『주원 제2호 공영(노외)주차장의 유료(무인) 운영』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원 제2호 공영(노외)주차장 유료(무인)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남동구 간석동 577-2번지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설되는 주원제2호 공영(노외) 주차장의 유료(무인)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운영방식)	유료화 시행 예정
주원 제2호 공영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577-2번지	17	3급지 (무인운영)	2022.10. 1. 이 후

4. 주차요금(월정기 및 시간제 병행)

주차장명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30분	15분당		
주원 제2호 공영주차장	노 외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5.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09. 08 ~ 2022. 09. 28(21일간)

8. 의견제출

- 간석동 577-2번지에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원 제2호 공영(노외)주차장 유료(무인) 운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09. 08 ~ 2022. 09. 28(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9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원 제2호 공영주차장 유료(무인)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7-2번지에 신설되는 공영 (노외)주차장의 유료(무인) 운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 - 1697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의거하여 남동구 만수동 72-51번지 상의 광고판 및 철구조물에 대하여 철거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1. 9. 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관 인
생 략

1. 처분내용: 광고판 및 철 구조물 직권 철거 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원인: 광고판 및 철 구조물 철거
4. 공시기간 및 공시송달 대상

가. 공고기간: 2022. 9. 8. ~ 2022. 9. 23.(15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

위치	대상	조치내용	비고
남동구 만수동 72-51번지	광고판 및 철 구조물	철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남동구 홈페이지
6.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공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남동구청에서 건축물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 도시디자인팀(☎032-453-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22 - 95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서창2지구 주변도로(광로3-7호선 외 2개노선)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만수동, 수산동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만수동, 수산동 일원	
설 치 일 자	붙임참조	
표 지 재 질	붙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16점)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중부		가리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X	Y	X	Y				
1	지적도근점	8550	538396.43	178940.23					운연동 15-48	2022.08.04.	철재	신설
2	지적도근점	8551	538371.39	178996.46					운연동 15-48	2022.08.04.	철재	신설
3	지적도근점	8552	538260.50	179162.86					운연동 57-4	2022.08.04.	철재	신설
4	지적도근점	8553	537456.57	176381.21					수산동 433-4	2022.08.04.	철재	신설
5	지적도근점	8554	537431.37	176498.20					수산동 424-3	2022.08.04.	철재	신설
6	지적도근점	8555	537453.66	176612.97					수산동 422-5	2022.08.04.	철재	신설
7	지적도근점	8556	537452.02	176713.07					만수동 789-16	2022.08.04.	철재	신설
8	지적도근점	8557	537449.68	176848.10					만수동 794-8	2022.08.04.	철재	신설
9	지적도근점	8558	537423.12	176993.12					만수동 810-122	2022.08.04.	철재	신설
10	지적도근점	8559	537443.09	177113.77					만수동 770-7	2022.08.04.	철재	신설
11	지적도근점	8560	537420.86	177257.51					만수동 745-4	2022.08.04.	철재	신설
12	지적도근점	8561	537409.93	177396.45					서창동 398-11	2022.08.04.	철재	신설
13	지적도근점	8562	537344.99	177495.60					서창동 400-4	2022.08.04.	철재	신설
14	지적도근점	8563	537265.30	177562.24					서창동 415-5	2022.08.04.	철재	신설
15	지적도근점	8564	537163.60	177604.63					서창동 438-3	2022.08.04.	철재	신설
16	지적도근점	8565	536985.40	177618.09					서창동 749	2022.08.04.	철재	신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22-96호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식)
 - 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6(구월동)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1-12
 - 면적: 3,472.9㎡
- 사업시행기간: 2019.10.11. ~ 2022.07.26.
- 준공인가 연월일: 2022.09.07.
- 준공인가 내역

주용도	세대수	층수	동수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아파트	120세대	지하1층/ 지상28층	1개동	900.8962㎡ (25.94%)	16,159.4222㎡ (377.9%)
오피스텔	38실				
근린생활시설	3호				

-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주차대수: 160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시 대지의 지번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032-453-64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9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52 (논현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52 (논현동)	2009.11.16.	인근지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호수,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등의 친환경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명	2022.9.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152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2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46 (구월동)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9.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08번길 46 기초구간에위치하여46을건물번호로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22 - 98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성신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택지예정좌표 측량과 관련하여 남동구 만수동 5-373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5-373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붙임참조	
표 지 재 질	붙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3점)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중부		가리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X	Y	X	Y				
1	지적도근점	8547	540704.08	176562.26					만수동 5-373	2022.07.12.	표철	신설
2	지적도근점	8548	540743.88	176589.38					만수동 5-15	2022.07.12.	표철	신설
3	지적도근점	8549	540689.82	176660.82					만수동 5-489	2022.07.12.	표철	신설